

# 독점 판매 계약서

\_\_\_\_\_에 위치한 \_\_\_\_\_ 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\_\_\_\_\_에 위치한 \_\_\_\_\_ (이하 "을"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"갑"이 국내 및 해외 제조·판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\_\_\_\_\_ 등(이하 "제품들"이라 한다)에 대한 해외 판매 권한을 "을"에 부여하는 공급조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.

## 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"을"이 개발한 국외 "을"의 납품 관계사에 대하여 "갑"이 "제품들"의 해외 판매에 대한 권한을 "을"에 부여하고 "갑"이 "을"에게 "제품들"을 공급하는 조건을 정하기 위함이다.

## 제 2 조 (정의)

"제품들"이라 함은 "갑"이 국내에서 개발을 완료하고 생산을 하는 \_\_\_\_\_을 의미하며, 별지 1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들을 의미한다.

Note: 독점판매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에서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독점판매권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물품의 명칭만으로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, 되도록 그 기준 및 규격과 같이 해당 물품을

특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한편 그 기준 및 규격이 상세할 것이므로 보통 별지를 이용합니다.

### 제 3 조 (계약기간)

본 계약 기간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\_\_\_\_\_까지로 하되, 당사자 일방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 만료일에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. 다만 "을"은 별지 2에서 정한 주문수량 및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쌍방 서명날인한 이후 \_년간 해당 수량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해당 국가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.

Note: 판매권의 부여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. 예시된 조항은 독점판매권 부여에 있어 최소구매조건을 설정한 것으로, 각 국가별로 개별 구매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계약의 만료일과는 별개로 그 국가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도록 설정한 것입니다. 이는 물품 제조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항으로,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독점판매권을 지닌 자가 특정 국가에서 그 판매역량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판매업자와 판매권 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.

### 제 4 조 (독점, 배타적인 판매 권한 부여)

① "갑"은 "을"에게 본계약 이후 "제품들"을 향후 \_년 동안 별지 2에서 정한 국가에서

독점·배타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다. "갑"과 "을"은 해외판매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해야 한다.

- ② "을"은 제1항과 같이 해외에서 판매 계약을 맺은 경우, 그 회사들의 주소, 명칭에 관한 정보를 판매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"갑"에게 통지해야 한다.
- ③ "갑"은 제2항과 같이 "을"로부터 "을"이 독점·배타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가지는 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은 경우 또는 다른 경로로 그 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"갑"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"제품들"을 그 회사들에게 공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.

Note: 독점판매권을 설정하는 조항입니다. 해외 독점판매권의 설정이므로 그 기간과 동시에 어떠한 나라에서 판매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핵심적인 결정 내용이 될 것입니다. 본 예시의 경우 별지를 이용하여 그 국가를 특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.

한편, 독점판매권의 설정자 또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난 경우 해당 국가에서 독점판매권 수여자를 통하지 않고 판매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 독점판매권 수여자의 온전한 독점권을 보장합니다(제3항)

## 제 5 조 (제품의 공급 단가 및 제품의 인도)

- ① "제품들"의 공급단가 및 공급수량은 별지 2와 같다..
- ② "제품들"의 공급 단가를 조정하여야 하는 가격변동 요인(제조원가, 운송비용의 증감 등)이 발생한 경우, "갑"과 "을"은 성실히 협의하여 새로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

야 하며,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"갑"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.

③ "갑"은 "제품들"을 "을"이 지정하는 곳에 "갑"의 비용으로 인도하여야 한다. 이 경우

"을"은 국내 선적항 또는 공항만을 지정장소로 할 수 있다.

④ 본 계약에 의한 납기 내에 "제품들"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, "을"이 "갑"에게 지급하

여야 하는 제품 대금에서, 지체 일수 1일당 총 지불 금액의 \_\_\_\_\_을 지체보상금으로

공제하기로 한다. 단,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"갑"이 이를 "을"에

게 사전 통보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

Note: 제품의 공급과 관련된 조항입니다. 공급단가의 조정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품공급자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므로 제품공급자에게 유리한 계약구조입니다. 독점판매권 수여자의 경우 제품공급단가를 계약기간 중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불리한 계약구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경우라면 "계약기간동안 "제품들"의 공급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"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한편 물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그 인도비용 및 지체상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.

## 제 6 조 (등록)

"을"이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정부에 "제품들"의 등록 또는 판매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"갑"은 "을"에게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.

단, 등록비용은 "을"이 부담한다.

Note: 해외에서의 판매이므로 그 판매에 규제당국으로의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자료협조의무 및 등록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

### 제 7 조 (제품공급 및 대금지불)

해외에 있는 "을"의 고객들이 "을"에게 발주를 낸 즉시, "을"은 "갑"에게 "제품들"을 발주한다. "갑"은 "을"에게 "을"의 발주 이후 제조 및 운송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제품수량이 \_\_\_까지는 \_일, 제품수량이 \_\_\_이상일 경우 \_일 내에 "제품들"을 인도한다. "을"은 "갑"에게 필요한 제품의 납품 후 90일 이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.

Note: 제품의 인도시기와 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규정합니다. 제조하여 인도하는 물품이므로 그 수량의 다소에 따라 인도시기를 달리 정하는 것이 제조업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.

### 제 8 조 (품질 보증)

"갑"은 별도의 추가합의서, 주문서 및 제조품목허가서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"을"에게 납품함을 보증한다.

### 제 9 조 (반품)

“갑”이 “을”에게 판매한 “제품들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의 요구에 따라 “을”의 반품요구일로부터 통상의 운송기간 이내에 “제품들”의 반품을 수령하여야 하며,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.

가. 제8조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인 경우

나. 주문내용과 다르게 잘못 운송된 경우

## 제 10 조 (계약 내용 변경 및 해지)
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제15조에서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6개월 이상 지속됨으로써 본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“갑” 또는 “을”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경우 최고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

가. 감독 관청에 의해 영업, 제조의 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

나. 제3자에 의해 압류,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

다.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이 제기될 때

라. 해산의 결의를 할 때

③ “갑” 또는 “을”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 및 그 시정을 최고하고, 최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정을 최고한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⑤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"을"은 "제품들"에 대하여 본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이후 \_\_개월간의 판매 권리를 갖는다.

Note: 통상의 해지조항과 다르게 동 계약의 경우 해외 판매권 독점 계약이므로 계약의 해지 후 일정기간 동안 그 판매권을 보유하도록 하여 이미 해외로 운송된 물품에 대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(제5항)

#### 제 11 조 (판매제한)

- ① "갑"은 "제품들"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고, "갑"이 "을"에게 독점.배타적 판매권을 허여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자임을 보증한다.
- ② "갑"은 계약기간 동안 "을"이 독점.배타적 판매권을 가진 해외 고객들을 상대로 "을"이 판매하는 "제품들" 내지 "제품들"과 유사한 품목들에 대한 판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.
- ③ "정"은 계약기간 동안 "을"이 독점.배타적 판매권을 가진 해외 고객들을 상대로 "제품들"과 유사한 품목에 대한 판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.

#### 제 12 조 (제조물책임과 면책)

"갑"은 "제품들"의 설계, 제조, 표시상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이나 제조물 책임 또는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, 디자인,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부터

“을”을 면책시켜야 한다.

Note: 제조물책임 혹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독점 판매권 수여자를 면책시키도록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합니다.

### 제13 조 (손해 배상)

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귀책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, 이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입힌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.

### 제 14 조 (신의, 성실의무)

- ①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본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신의로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②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실시하며,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
### 제 15 조 (불가항력)

- ①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천재지변, 폭동, 전쟁, 대형 화재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



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. 다만, 상황이 급박하여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과 서면 교환이 가능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**제 16 조 (구속력)**

본 계약의 본문과 별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별지의 내용이 우선한다.

#### **제 17 조 (관할법원)**

본 계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"갑"의 소재 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#### **제 18 조 (계약의 효력발생)**

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이상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"갑"과 "을" 과 "정"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,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\_년 \_월 \_일

"갑"

"을"

## [별지 1] “제품들”의 기준 및 규격

## [별지 2] 공급단가, 공급수량 및 최소구매수량

제품공급단가 : 계약품목별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품 명	발 주 수 량 / 년	납품단가(\$)
	~100	
	100~500	
	500~1000	

최소구매수량

품 명	국 가	최소구매수량 / 년